

## 철도운임 원가정보

### 1. 총괄표

(단위 : 억 원)

항 목	결 산					예 산	
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비중
I. 총괄원가(1+2)	28,111	28,801	28,183	25,965	25,063	28,312	100.0%
1. 적정원가(①+②+③-④-⑤)	23,625	25,229	25,576	22,418	22,194	25,272	89.3%
① 영업비용(㉠+㉡+㉢)	22,055	23,998	24,538	22,557	22,727	25,442	89.9%
㉠ 인건비	7,827	8,732	9,607	8,840	9,044	10,370	36.6%
㉡ 판매비와일반관리비	476	521	496	404	432	504	1.8%
- 간접부서의 경비	447	463	455	382	407	458	1.6%
- 연구관련 경비	5	7	11	5	7	19	0.1%
- 판매촉진비 등	24	51	29	17	17	27	0.1%
㉢ 기타 경비	13,752	14,745	14,436	13,313	13,251	14,568	51.5%
- 감가상각비	3,190	2,987	2,789	2,934	3,145	3,524	12.4%
- 동력비	2,308	2,642	2,494	2,279	2,191	2,510	8.9%
- 시설사용료	5,914	6,329	6,561	4,234	4,266	4,888	17.3%
- 수선유지비 등 기타	2,342	2,788	2,592	3,866	3,649	3,646	12.9%
② 영업외비용	173	177	280	191	386	-	-
③ 법인세비용	1,432	1,140	832	1,132	916	971	3.4%
④ 영업외수익	35	86	74	49	392	-	-
⑤ PSO수익	-	-	-	1,413	1,443	1,142	△4.0%
2. 적정투자보수(①×②)	4,486	3,572	2,607	3,547	2,869	3,040	10.7%
① 운임기저	79,643	69,711	67,283	66,876	66,081	69,641	-
② 적정투자보수율	5.63%	5.12%	3.87%	5.30%	4.34%	4.37%	-
II. 운송수입(1×2)	23,886	25,356	26,422	14,867	16,702	25,269	-
1. 수요량(1억인km)	220	230	236	138	151	230	-
2. 적용단가(원/인km)	108.8	110.2	112.0	107.7	110.6	109.9	-

\* 철도운송사업 중 여객운송서비스부분에 대한 원가정보임(전철 및 화물운송부분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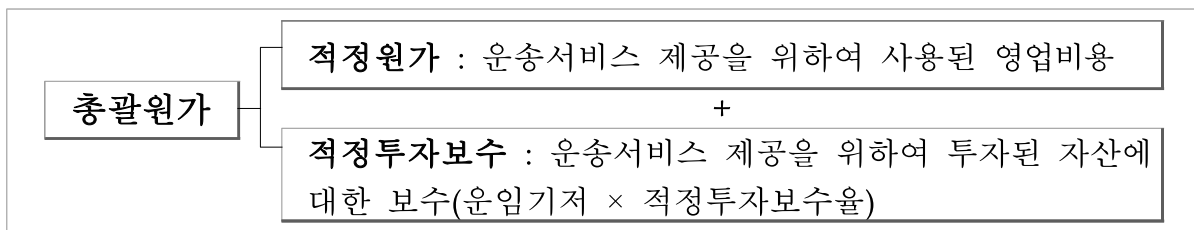
## 2. 원가정보 설명자료

### (1) 철도운임 원가정보의 공개배경

-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요금의 공개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요금의 안정화 도모
- 공공요금의 산정방식, 결정체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요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이해 증진

### (2) 철도운임의 산정방식

- 철도운임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
  - 산정근거
    - 「공공요금 산정기준」: 기획재정부 훈령 제345호(2017.8.7., 일부개정)
    - 「철도운임 산정기준」: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-1295호(2020.4.11., 일부개정)
  - 총괄원가는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철도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



- 철도운임은 km당 임률과 이용거리를 곱하여 산정하는 거리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되 고속의 경우에는 고속선 및 기존선에 대한 복수임률제를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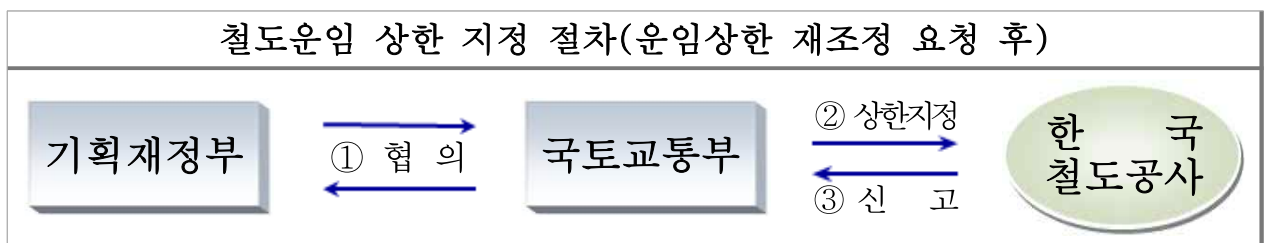
구 분	고속	새마을호	무궁화호	통근열차	누리로
운임체계	복수임률제	거리비례	거리비례	거리비례	거리비례
	$P = a \times d \pm \alpha$	$P = a \times d$	$P = a \times d$	$P = a \times d$	$P = a \times d$

\* P : 운임, a : 임률, d : 거리, α : 기존선에 대한 체감률

- 요금은 특실사용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일정비율을 적용

### (3) 철도운임의 결정체계

- 철도운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매년 산출된 원가를 기초로 하며, 철도운임상한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요청
-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철도사업법시행령 제4조」에 따라 철도운임의 상한을 새로 지정할 경우 필요에 따라 ‘철도산업위원회’를 개최하여 심의가능
- 국토교통부장관은 내부방침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철도운임상한 지정에 관하여 협의
-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철도운임상한지정 결과를 관보 게재하고, 한국철도공사는 그 결과에 따라 상한지정된 임률 범위 내에서 철도운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고



### (4) 원가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

#### □ 총괄원가 (적정원가 + 적정투자보수)

○ 적정원가 : 영업비용 + 영업외비용 + 법인세비용 - 영업외수익 - PSO 수익

#### ① 영업비용

㉠ 인건비 : 운송서비스에 종사(기여)하는 임직원의 급여, 제수당, 잡급, 퇴직금 등으로 구성

㉞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: 운송서비스를 위한 관리활동, 연구 및 판매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

- 간접부서의 경비 : 인사, 회계, 총무 등 관리업무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
- 연구관련경비 :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
- 판매촉진비 등 : 판매개발조사비 및 판매촉진비의 합계

㉟ 기타 경비

- 감가상각비 : 운송서비스에 기여한 철도시설물 및 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에서 자산재평가분 및 유휴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를 차감
- 동력비 : 철도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및 전철전기료
- 시설사용료 : 국가소유자산인 기반시설과 운영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
- 수선유지비 등 기타 : 운송서비스에 소요되는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소요된 수선유지비 및 기타경비의 합계

② 영업외비용 : 유무형자산 처분손실 등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(금융비용 제외)

③ 법인세비용 :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용

④ 영업외수익 :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등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(금융비용 제외)

⑤ PSO 수익 : 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 운임 감면,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액

○ **적정투자보수** : 운임기저 × 적정투자보수율

① **운임기저** : 운송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는 해당 회계년도의 기초·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, 기초·기말 평균 무형자산액,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산재평가액 차감

② **적정투자보수율** :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

\* (자기자본 보수율)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(CAPM)에 따라 산정

\* (타인자본 보수율) 규제서비스 관련 이자부부채의 기초·기말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평균 차입이자율 산출 적용

## □ 운송수입

○ **수요량** : 해당 회계기간에 수송한 수송량으로 인킬로미터(人·km) 단위 사용(예산기준은 예측치 반영)

\* 1인km : 승객1인이 1km 이동한 수송량

○ **적용단가** : 운송수입 ÷ 수요량

## 3. 작성자

(1) 작성자 :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이 대 위 (☎ 042-615-3565)

(2) 감독자 :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박 순 영 (☎ 042-615-3551)

(3) 확인자 : 한국철도공사 감 사 실 강 석 진 (☎ 042-615-3281)